

제정 2010. 8. 11.
최종개정 2016. 5. 9.

태권도심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심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사의 시행,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규칙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장 심사위원

제3조(심사위원의 사명)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함을 사명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심사질서 유지와 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신과 심사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는 등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구분 및 역할) 태권도심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관 : 심사시행 현장에서 심사 규정, 규칙 준수 권고, 심사질서 유지, 부정행위 예방 및 적발 등 심사시행을 관리, 감독하고, 심사시행 실태를 평가한다.
2. 심사평가위원
 - 가. 저단자 심사평가위원 : 5단 이하의 승품·단 응시자를 평가한다.
 - 나. 고단자 심사평가위원 : 6단 이상의 승단 응시자를 평가한다.
 - 다. 기관 심사평가위원 : 군경 등 특수한 목적을 지닌 단체로서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가 시행하는 심사에서 5단 이하의 승단 응시자를 평가한다.
 - 라. 특별심사평가위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의 응시자를 평가한다.
3. 심사시행책임담당관 : 심사재수임단체가 시행하는 심사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운영, 관리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자격) 태권도심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관 : 태권도 9단 이상,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1급 이상, 심사평가위원 활동경력 5년 이상자로 한다. 단, 국기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 평가위원 활동경력 7년 이상자에 한하여 태권도 8단 이상, 태권도 승품·단 심사 위원 자격 2급 이상자로 할 수 있다.
2. 심사평가위원
 - 가. 저단자 심사평가위원 : 태권도 6단 이상,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3급 이상 소지자로 한다.
 - 나. 고단자 심사평가위원 : 태권도 9단,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2급 이상 소지자로 한다. 단, 논술심사평가위원은 논술심사를 위한 기능 수행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 기관 심사평가위원 : 태권도 9단,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2급 이상 소지자로 한다.
 - 라. 특별심사평가위원 : 태권도 9단, 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 2급 이상 소지자로 한다.
3. 심사시행책임담당관 : 심사재수임단체장이 국기원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임명)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필요에 따라 심사시행을 위임한 심사수임단체장의 추천을 통하여 국기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제5조의 심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부터 서약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기원 정기이사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사유) ① 감독관은 자신의 주소(국내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에서 시행하는 심사는 감독할 수 없다.

② 심사평가위원은 자신이 직접 지도하는 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평가할 수 없다.

제8조(심사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기원,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③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특별심사평가위원은 예외로 한다.

- 제9조(심사위원의 보수)** ① 심사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파견비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기원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②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는 심사위원의 보수는 해당 단체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3장 심사수수료

- 제10조(심사수수료의 부과)**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규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위임수수료 및 시행수수료를 부과한다.
 1. 심사수임단체는 위임수수료를 부과한다.
 2. 국기원,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가 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수수료를 직접 부과한다.
③ 태권도심사규정 제8조 제2항 각 호의 심사수수료는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④ 해외 심사수수료는 국가별 국민의 실질적 구매력을 감안한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에 따라 등급을 두어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미수교국 등 정책적 보급 차원의 지역 및 국가
 2. 천재지변에 의하여 재난을 당한 지역 및 국가
 3. 기타, 감면이 요구된다고 판단된 지역 및 국가
 4.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장애우 및 극빈자
⑥ 국기원은 심사수수료를 발급, 위임, 시행수수료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수수료의 환불)** 태권도심사규정 제8조 제6항에 따라 심사수수료를 낸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심사수수료를 잘못 낸 경우
 2. 심사를 시행한 국기원,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의 귀책사유로 심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심사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부상자, 중증 질환자, 전염성 질환자 또는 임신을 뒤늦게 인지한 자가 심사시행 3일 전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4장 심사시행

- 제12조(심사의 공고)**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9조 제1항 따라 심사시행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심사시행일시, 심사장소, 접수기간, 심사방법, 심사과목, 응시자격, 응시자의 준비사항, 주의

사항, 합격자 공고일 등을 심사시행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시행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자격)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자신의 국적 이외 국가에서 시행하는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단,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가한 기관 관계자 또는 국가원이 해외 국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참가, 수료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4조(응시결격사유)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임신부
3. 부상자
4. 중증 질환자
5. 전염성 질환자
6. 태권도심사규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결격사유를 숨기고 심사에 응시하거나, 심사에 합격하여도 향후에 발각 즉시 해당 품·단의 자격은 자동 취소된다.

제15조(응시자격의 특례)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태권도 유공자와 관련한 응시자격의 특례는 평생 1회에 한하여 7단 이하의 심사에만 연한의 단축 혜택을 부여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대학교(태권도학과, 태권도전공)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3학년 2학기 종료 전까지 3단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자) 및 학점은행제 졸업예정자(대학교 4학년 졸업학력 이수 학점 중 80%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4단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응시자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16조(심사과목의 일부면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심사에서 태권도심사규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세부과목 중 1과목의 과락으로 인하여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차수의 심사에서 합격한 과목을 면제하고,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표준심사과목의 구분 및 시행방법)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 심사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시행한다.

1. 실기

- 가. 기본동작과목 : 태권도의 기본인 서기(넓혀서기, 모아서기, 특수품서기), 방어(막기, 잡기), 공격(지르기, 치기, 짜르기, 차기, 꺾기, 넘기기), 특수품 등으로 구성되며, 1회 심사 시 15세 미만 응시자는 8인 이하, 15세 이상 응시자는 6인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나. 품새과목 : 유급자 품새(태극 1장 ~ 8장), 유단자 품새(고려, 금강, 태백, 평원, 삽진, 지태, 천권, 한수, 일여) 등으로 구성되며, 1회 심사 시 15세 미만 응시자는 8인 이하, 15세 이상 응시자는 6인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1) 지정품새 : 심사 시행 당일 공개 추첨으로 지정하는 품새로 각 품·단별로 1개 품새를 시행하며, 1품의 경우 2개의 품새를 추첨, 지정한다.
 - 2) 필수품새 : 각 품·단별로 지정되어 필수로 시행하여야 하는 품새로 1인 1개 품새를 시행하며, 1품의 경우 지정품새로 대체한다.
- 다. 겨루기과목 : 1회 심사 시 2인 1조를 대상으로 경기 겨루기를 시행한다.
- 라. 격파과목 : 1회 심사 시 1인을 대상으로 손날격파, 발격파 등을 시행한다.
- 2. 이론
 - 가. 필답과목 : 태권도 역사, 정신, 철학, 경기, 경연, 구성요소 등 태권도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관하여 객관식, 주관식의 유형으로 출제한 20문제의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도록 한다.
 - 나. 논술과목 : 태권도와 관련하여 출제한 주제와 답안지 형태, 작성지침,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한국어 또는 영어로 답안지를 기술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3. 면접과목 : 1회 심사 시 5인 이하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구술면접을 시행한다.
- ② 제1항 제1호의 실기는 각 과목별로 응시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하여야 하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필답과목과 논술과목의 답안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품·단별 표준심사과목은 [별표 3]과 같다.
- ⑤ 태권도심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심사과목을 신설, 추가하기 위하여서는 심사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8조(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표준심사과목의 평가요소,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
 - 가. 기본동작과목 : 정확성, 숙련도, 균형 등의 평가요소를 심사평가위원 5인(3인)이 각각 평가한다.
 - 나. 품새과목 : 완성도(품새 완결, 정확성, 공방목표, 자세의 굴신), 숙련도(속도의 완급, 몸의 중심이동, 힘의 강유, 기의 집중, 호흡, 기합), 품위(태도, 예절, 차림새) 등의 평가요소를 심사평가위원 5인(3인)이 각각 평가한다.
 - 다. 겨루기과목 : 공격력,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 등의 평가요소를 심사평가위원 5인(3인)이 각각 평가한다.
 - 라. 격파과목 : 격파물의 완파(손날, 발)여부, 자세 등의 평가요소를 심사평가위원 3인이 각각 평가한다.

2. 이론

- 가. 필답과목 : 20문제 중 12문제 이상의 정답 수를 확인하여 심사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나. 논술과목 : 주제와의 적합성, 작성지침의 이행 등을 고려하여 논술심사평가위원이 평가한다.
3. 면접과목 : 태권도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지식, 태권도 발전에 대한 공적, 활동경력, 품격, 인성, 사회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평가위원 5인(3인)이 각각 평가한다.
- ②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은 동일한 심사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③ 표준심사과목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표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심사의 합격여부 결정) ① 각 과목별 심사평가위원의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은 합격, 59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② 과목별 각 심사평가위원의 평가를 취합하여 심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 ③ 제2항의 각 과목별 평가 중 1과목이라도 심사평가위원 과반수의 이상이 불합격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최종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④ 태권도심사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항은 심사를 시행한 국기원,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번복할 수 없다.

제20조(심사결과자료의 요구 및 절차)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4조 제1항 따라 해당 응시자에게 자료를 열람시키기 위하여서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자료요구서 [별지 서식 1]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② 심사결과자료를 요구할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결과자료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응시자 개인의 심사결과자료를 열람시킬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부분 열람시키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심사장 제반시설 등)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심사장 제반시설 및 구비 물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동작과목, 품새과목 심사시행 시 가로 8m × 세로 8m($64m^2$) = 약 19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겨루기과목 심사시행 시 2인 1조를 기준으로 15세 미만 응시자는 가로 5m × 세로 5m($25m^2$, 약 8평), 15세 이상 응시자는 가로 6m × 세로 6m($36m^2$, 약 11평)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격파과목 심사시행 시 가로(세로) 5m × 세로(가로) 4m($20m^2$, 약 6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실기 심사과목별 심사시행 시 응시자 대기 장소는 과목당 $33m^2$ (약 1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실기 심사과목별 심사시행 시 바닥은 안전을 고려하여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매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6. 실기, 이론 및 면접과목의 심사시행 시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및 재난시설

등의 안전이 보장된 장소이어야 한다.

7. 실기, 이론 및 면접과목의 심사시행 시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이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책상, 의자, 좌석명판 등 물품을 구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심사과목별 공간에 따른 평면도 및 배치도는 [별표 5]와 같다.

제22조(심사위원 등 배치) 태권도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 의료진 등의 구성과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평가위원은 제18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라 구성, 각 과목별 심사시행 장소에 배치한다.
2. 감독관의 경우 1인 이상으로 구성, 심사를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3. 진행요원, 의료진은 응시자 수, 심사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 배치한다.

제23조(복장)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응시자, 심사위원, 진행요원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
 - 가. 응시자가 [별표 6]과 같이 국기원이 지정한 태권도복과 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승품 응시자는 품 도복, 승단 응시자는 단 도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4품 응시자는 단 도복 착용을 허용한다.
 - 다. 응시자가 도복 이외의 부속물(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응시자가 도복 이외의 복장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여성 응시자의 경우 도복 상의 안에 백색 셔츠 착용을 허용한다.
 - 마. 응시자의 도복 부착물 허용범위는 [별표 7]과 같다.
 2. 심사평가위원과 진행요원은 통일성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응시자를 대상으로 제1항 제1호 각 목에 대하여 사전에 주지시켜야 하며, 위반 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심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 및 질서대책 등) 태권도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안전 및 질서대책, 예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시행 전 응시자, 심사평가위원, 진행요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응시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3. 겨루기과목 응시자에게 안전보호용구(머리보호대, 몸통보호대, 낭심보호대 등)를 착용시켜 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심사를 시행하는 심사장 내에는 응시자, 심사위원, 진행요원, 의료진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심사시행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심사시행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심사장은 관리자측이 정한 수용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부정행위, 질서방해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발각 즉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심사를 무효로 처리한다.
7. 심사시행 현장에 실제 참여한 응시자와 심사추천 절차를 거쳐 접수한 응시자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개회식 등 심사의 예식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위임

제25조(심사위임 및 승인)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심사수임단체에 위임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심사수임신청서[별지 서식 2]
 2. 심사시행계획서[별지 서식 3]
 3. 심사수수료 승인신청서[별지 서식 4]
 4. 심사 관련 규정
 5. 기타 심사위임에 필요한 서류
- ② 태권도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심사수임단체가 국기원으로부터 수임한 심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심사재수임단체에 다시 위임하기 위하여서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국기원에 제출하고,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체결 등)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심사위임의 목적, 심사수수료, 위임기간, 심사수임단체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임에 관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기원 정기이사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무 및 책임)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국기원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원은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심사시행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심사수임단체에 심사재수임단체의 감독관 파견을 위임할 수 있다.
 2.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규정 제6조 제1항의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태권도심사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심사수임단체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업무를 처리할 때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심사수임단체는 당해 연도 심사시행계획서, 전년도 심사시행보고서, 심사수수료 결산서를 정기총회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시행에 따른 응시자 명부[별지 서식 5]와 심사결과를 심사시행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국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사항과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6.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재수임단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위임의 취소 등)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를 수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수임단체의 심사위임을 정지, 취소하여야 한다.

1. 자체적으로 품·단증을 발급, 교부한 경우
 2. 심사업무 및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여 국기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국기원의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분쟁을 일으킨 경우
 4. 국기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심사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
 5. 심사 관련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6. 심사 관련 중대한 문제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심사의 권위를 실추시킨 경우
 7. 임원의 갈등, 분쟁 및 법적문제 등의 사유로 심사시행을 비롯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9. 공정한 심사시행을 위하여 국기원의 직접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태권도심사규정 및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11.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재수임단체에게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심사수임단체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재수임단체의 심사위임을 정지, 취소하여야 한다.

제6장 심사추천

제29조(심사추천 권한 및 책임)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심사추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운용하며, 심사추천 권한은 온라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사추천 ID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추천 권한은 제25조 제1항, 제2항의 절차를 거치면 심사수임단체, 심사재수임단체, 소속 태권도 사범에게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③ 심사수임단체는 태권도심사규정 제19조 제2항의 태권도 사범의 자격여부,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태권도 사범은 심사추천 시에 제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제출서류를 응시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⑤ 태권도심사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지도한 자를 심사추천할 때에는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국기원이 국가협회, 태권도 단체, 기관에 심사추천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해외추천사범이 국기원에 직접 심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⑦ 심사수임단체가 없는 해외 응시자의 심사추천은 국기원 심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대신 할 수 있다.

제30조(심사추천 권한의 취소 등) 태권도심사규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추천 권한을 정지, 취소할 수 있다.

1. 심사추천 ID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2. 심사추천 ID를 도용한 경우
3. 태권도 외에 타 무술, 무예, 무도 수련자를 심사추천한 경우
4. 심사추천 권한 부여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태권도심사규정 및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6. 기타 태권도와 국기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7장 품·단증 교부 등

제31조(품·단증의 교부)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품·단증을 교부할 때에는 국기원장의 심사 결과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품·단증에는 대상자의 국적, 품·단 번호, 생년월일, 심사시행일, 도장명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③ 품·단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신의 품·단의 자격을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국기원에 자진하여 품·단증을 반납하는 경우 사유서[별지 서식 6] 등 제반서류를 제출받고 품·단의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단,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실효시키려는 품·단의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명예단증·추서단증의 교부)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명예단증, 추서 단증을 발급, 교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권도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발급, 교부한다.
2. 명예단, 추서단 심사 대상자는 태권도계와 국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 등의 공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명예단, 추서단 심사 대상자의 추천은 국기원장, 심사수임단체장 등이 하며, 추천자는 제36조 제1항 제6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4.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명예단증을 거듭 발급, 교부하지 아니한다.
5. 명예단증을 교부받을 자가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거나 추서

단증의 경우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6. 명예단증, 추서단증을 교부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태권도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그 명예단증, 추서단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른 명예단증, 추서단증의 취소는 심사공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33조(품·단의 자격 전환 단증 교부)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단증을 교부하기 위하여서는 제36조 제1항 제7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4품의 자격을 보유하고, 만 18세 이상이 된 자가 4단으로 자격을 전환, 단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품·단의 자격 전환 등록에 따른 단증의 교부 시 수수료[별표 8]를 부과한다.

제34조(품·단증의 재교부)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20조 제4항에 따라 품·단증을 재교부하기 위하여서는 신청자로부터 제36조 제1항 제8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유품·단자가 개명 등 인적사항 변경을 신청하여 품·단증을 재교부할 경우 제36조 제1항 제9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품·단증의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별표 8]를 부과한다.

제35조(심사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징계) 태권도심사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하여야 한다.

1. 심사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경우
2. 심사평가 관련 조작, 과실 등의 경우
3. 부정행위, 심사시행 방해 등 각종 심사 관련 질서 문란행위의 경우
4. 태권도심사규정 및 이 규칙, 각종 위원회 규칙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태권도와 국기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36조(제출서류 등) ① 태권도심사규정 제22조에 따른 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응시할 경우
 - 가. 심사신청서 1부[별지 서식 7]
 - 나.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장
 - 다. 1품·단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등)본 1부
 - 라. 1품·단 응시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서식 8]
 - 마. 8, 9단 응시자는 태권도 활동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 1부[별지 서식 9]
 - 바. 보수교육 등의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1부
2. 해외 국적자가 국내에서 심사에 응시할 경우
 - 가. 심사신청서 1부[별지 서식 7]
 - 나.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장
 - 다. 8, 9단 응시자는 태권도 활동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 1부[별지 서식 9]

- 라. 제13조 제2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1부 또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여권
- 마. 제13조 제2항에서 예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응시자격의 특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경기실적 특례자는 국가협회장 또는 주최 기관에서 발급, 교부한 확인서
- 나. 공로실적 특례자는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확인서
- 다. 제16조 제1항 2호에 따른 자격특례자는 총 이수학점 대비 80% 이상의 학점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1부,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재학증명서(4년제 대학교의 경우 4학년 2학기 재학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라. 기타 특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내 국적자가 해외에서 품·단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서 심사에 응시할 경우
- 가. 심사신청서 1부[별지 서식 7]
- 나.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장
- 다. 주민등록초(등)본 1부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서식 8]
- 마.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5. 해외 국적자가 해외에서 품·단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 국내에서 심사에 응시할 경우
- 가. 심사신청서 1부[별지 서식 7]
- 나.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장
- 다. 주민등록초(등)본 1부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서식 8]
- 마.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귀화허가 사실증명서 중 1부
6. 명예단, 추서단을 신청할 경우
- 가. 이력서 1부[별지 서식 9]
- 나. 공적조서 1부[별지 서식 10]
7. 품·단의 자격 전환을 신청할 경우
- 가. 신청서 1부
- 나. 신분증
- 다.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장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서식 8]
8. 품·단증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 가. 신청서 1부
- 나. 신분증
- 다.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장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서식 8]
9. 품·단의 인적사항 변경을 신청할 경우
- 가. 신청서 1부
- 나.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장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서식 8]
 - 라. 1996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품·단증, 사법 자격증 원본 1부
 - 마. 인적사항 변경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중 1부
 - 바. 인적사항 변경의 법적 결정문, 변경 사실을 공증한 동일인 인증서 중 1부
 - 사. 기타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② 제1항의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에는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 제출서류는 확인 과정을 거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7호 나목, 제8호 나목 등의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인정된다.
1.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2. 운전면허증(2002. 6. 30. 이전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제외)
 3.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4. 외국인등록증

제8장 보 칙

제37조(규칙적용)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시행되는 심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규칙의 해석) 이 규칙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국기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 심사관리규정 및 심사운영규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8조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자에게 적용한다.